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29

발의연월일: 2021. 5. 27.

발 의 자 : 이만희·권명호·엄태영

박대수・김승수・윤한홍

한무경 · 김선교 · 권성동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연관성이 큰 지정제도의 경우 지정기준·절차·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위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컨테이너형 식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경우, 지정요건 ·비용 부담·감독 규정 등의 모든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 임.

이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을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검정 등) ① (생 략) 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 ②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으려 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험기관-----"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야 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삭 제>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u>을 얻은 자가</u>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 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

 지 아니한 때
- ⑦ 제1항부터 <u>제6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⑧ (생 략)<신 설>

⑦ <u>মা5</u> জু
<u>.</u>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
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 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 지 아니한 때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u>때</u>
-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